도시관리계획(당하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및 지형도면고시
- 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부분 -

변 경

구 분	허 용 용 도	불 허 용 도
A-1	· 단독주택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A-2	· 단독주택 · 1종 근린생활시설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B-1	· 다세대, 연립 주택 및 무대복리시설 (주택건설촉진법 적용) · BL37은 연립주택 및 무대복리시설 (주택건설촉진법 적용)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B-2	· APT 및 무대복리시설 (주택법 적용)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B-3	· APT 및 무대복리시설 (주택법 적용)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C-1	·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(국토의계획및이용체계관련법률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적용)	· 주택(주상복합 제외) / · 의료시설중 격리병원, 장례식장 ·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, 청도역사, 공항시설, 항만시설 · 공장(인쇄형태시 전파소재 화훈송도 제외), 시내버스 차고지, 창고시설 · 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, 세차장, 차량정비장 제외) · 동물, 식물 관련시설(식물관련시설 제외) ·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/ ·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, 감화원, 발전소,군사시설 ·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석유판매소, 주유소 제외) ·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(정화구역에 반함)
C-2	·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(국토의계획및이용체계관련법률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적용)	■ 제한용허용도 · 주택(단, 주거용이 8/10 이하로 타용도복합시 가능),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, 공항시설, 항만시설 · 공장, 창고시설,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(단 주유소, 석유판매소 제외) · 자동차 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 · 동물, 식물 관련시설(식물관련시설 제외) ·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/ ·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, 감화원, 발전소,군사시설 · 묘지관련, 화장시설중 화장장, 장례식장(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) ·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(정화구역에 반함) ■ 1종허용도 · 경마장, 동물원, 낚시, 씨름, 레이트, 세탁소, 연탄취급소, 장의사, 목공분이 단한, 양식, 고물상, 산촌라지, 달리능장시설 중 (단, 장축장은 기도경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건축물 내부에 조성되는 경마장은 허용)
D-1	·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(국토의계획및이용체계관련법률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적용)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D-2	· 1종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, 파출소, 주제무, 보건소 등 공공의 요하는 시설 및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(국토의계획및이용체계관련법률 및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적용)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D-3	· 종교시설중 종교집회장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D-4	· 주차장법 제2조에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(주 자전거관리용 및 부속용도) · 지붕식 설치시 허용용도 - 관리사무소, 주차장의 관리 - 운영상 필요한 관리시설 · 주차전용건축물 건축시 적용용도 -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부의 건축면적의 70% 이상이어야 함 - 단독(20㎡)은 주거용의 8/10이 초과 시용도 복합 시 가능) - 공동주택(20㎡)은 불허) - 제1종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)마사술소, 단란주점, 장의사, 총포사, 동교시설, 학원설트민습장제외) - 분뇨 및 정화시설, 전매시설, 분장시설, 도박시설 또는 사회저해인시설(3호, 4호), 6(1)은 주차장, 세차장, 매매장만 허용, 20(7)은 주차장만 허용)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허용용도	·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(정화구역에 반함) 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
주) A-1, A-2, B-1용도의 경우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

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 호
서 기 2018년 월 일

본 도면은 변경으로 명시된 부분만이 유효함

구 분	입 안 권 자			결 정 권 자	
	작 성 자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	1차 확인자	2차 확인자
소 속	명인기술단	서 구 청 도시개발과	서 구 청 도시개발과	서 구 청 도시개발과	서 구 청 도시개발과
직 위	—	—	지역개발팀장 담당	—	지역개발팀장 담당
직 명	고급기술자	지방시설 주 사 보	지방시설 주 사	지방시설 주 사 보	지방시설 주 사
성 명	안 현 수	김 진 만	이 성 호	김 진 만	이 성 호
확인인					